



보도시점 (온라인) 2026. 9. 6.(일) 12:00
(지면) 2026. 9. 7.(월) 조간

배포 2026. 9. 4.(금) 16:00

사망자 명의의 불법 금융거래,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즉시 막는다.

- 오는 11일부터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전면 가동
- 사망신고 접수 다음 날부터 모든 금융권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정지
- 치료비 및 장례비 등 긴급한 자금은 “예외 인출” 제도 활용 가능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금융위원회(위원장 이덕원),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 한국신용정보원(원장 최유삼)은 오는 11일부터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정식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부정 금융거래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일부 금융회사는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정보를 월 1회 제공받아 금융거래 차단에 활용해 왔다. 그러나, 사망신고 기한(1개월)과 정보공유 주기(월 1회)를 고려하면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최대 2개월 정도 걸릴 수 있고, 활용기관도 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에 한정되다 보니,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부정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데 사각지대가 있었다.

(개선 전) 사망자 정보 공유절차



정부·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년여간 관계기관 및 금융회사들과 협의를 거쳐 사망자 정보의 생성·공유부터 금융거래 차단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민·관 통합 대응 체계인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구축했다.

>> 오는 11일부터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전면 가동

이 시스템은 사망자 정보를 전 금융권에 신속하게 공유하고,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실행 전에 사망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부정 금융거래를 방지한다.

① 매일 1회 사망자 정보 제공, 금융거래 차단은 즉시

우선, 행정안전부는 사망자 정보 제공 주기를 기존 월 1회에서 매일 1회로 대폭 단축한다. 금융회사는 대면·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거래 당사자의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거래를 차단한다.

② 모든 금융권, 모든 금융거래 대상

둘째, 사망자 정보를 활용하는 금융회사를 은행·보험·카드·증권·저축은행·상호금융 등을 아우른 모든 금융권(4,890개사)으로 확대한다. 사망자로 확인되는 경우, 입금 등 필수적인 금융거래*를 제외한 모든 금융거래를 즉시 차단해 제도적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 1) 입금 허용 : 예금주 사망 시 상속인이 별도의 채권 회수 절차를 강구해야 하는 불편을 고려하여 사망자 예금계좌에 대한 입금 가능

2) 예외 인출 : 사망자의 치료비·장례비 등 긴급·불가피한 경우 금융회사에 가족관계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인출 가능(병원·장례식장 등에 직접 입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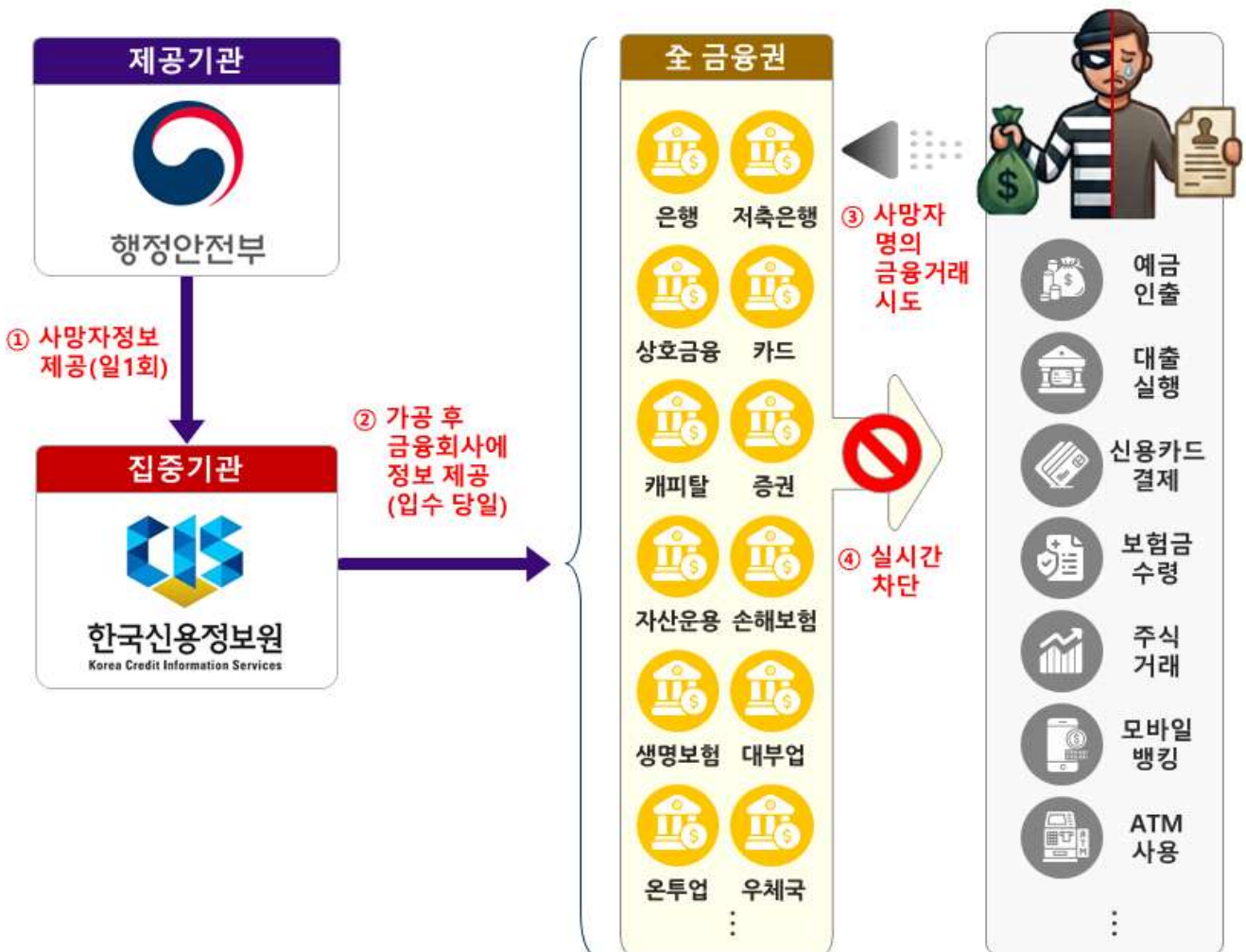
③ 사망신고만으로 자동 처리

셋째, 유가족이 금융거래 차단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사망신고 시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 및 금융회사와 연계되어 금융거래 차단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처리된다.

④ 사망자 정보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끝으로, 사망자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내부통제 체계도 구축한다.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사망자 정보를 금융거래 차단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금융회사는 사망자 정보 처리 및 금융거래 이력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은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금융회사의 사망자 정보 관리 및 내부통제 실태 등을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개선 후) 사망자 정보 공유 및 거래 차단 프로세스



>> 사망자 금융거래 차단에 따른 안내 ※ 붙임 참고

유가족은 적절한 상속 절차를 거쳐 금융 거래를 해야 하며, 사망자의 치료비·장례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 등이 시행 중인 ‘예외 인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 고인의 치료비나 장례비용 등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가 관련 증빙서류 확인 후 해당 병원·요양원·장례식장 등에 직접 이체해 주는 제도

또한, 사망자 명의 계좌의 자동이체가 중단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기존 공과금 및 보험료 등의 미납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납부방법 등을 미리 변경할 필요가 있다.

사망자의 상속재산은 「상속인 금융거래조치 서비스(금융감독원)」,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이번 개선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부정 금융거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한국신용정보원 및 금융회사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유가족의 불편 사항 최소화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주민과	책임자	과 장	최이호 (044-205-3141)
		담당자	사무관	박진숙 (044-205-3153)
<공동>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윤희 (02-2100-2620)
		담당자	사무관	변경홍 (02-2100-2696)
<공동>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총괄국	책임자	국 장	이 석 (02-3145-7120)
		담당자	팀 장	김은철 (02-3145-7140)
<공동>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데이터부	책임자	부 장	유형우 (02-3705-5917)
		담당자	팀 장	최재철 (02-3705-5911)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차단 관련 유가족께 드리는 안내사항

먼저, 소중한 가족을 떠나 보내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차단 제도’에 따라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의 금융 거래가 제한됩니다. 이는 고인 명의의 금융거래가 범죄 등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유가족의 정당한 상속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금융거래 제한으로 인해 장례비용 지급이나 공과금 납부 등에 일시적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 차단 시점 : 사망신고 접수 다음 날부터

▣ 차단 대상 : 예금인출,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등 고인 명의의 금융거래

유가족께서 알아두실 사항

① 고인의 예금 등은 상속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고인의 카드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임의 금융거래는 횡령죄, 사기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른 상속인과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속예금을 인출하려는 경우, 상속인 전원 동의와 증빙서류*를 갖추어 금융회사에 지급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상속인 전원의 신분증·인감증명서 등(금융회사 문의)

② 치료비·장례비 등 긴급한 비용은 ‘예외 인출’ 제도를 활용하세요.

- 고인 치료비나 장례비 등 긴급한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확인을 거쳐 병원·요양원·장례식장 등에 직접 지급할 수 있으므로 거래 금융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자동이체 중단에 미리 대비해 주세요.

- 금융거래가 제한되면 통신비, 관리비, 보험료, 대출이자 등의 자동이체도 중단됩니다. 요금·이자 미납이나 보험 계약 실효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제 수단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④ 고인의 금융재산과 채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와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금융거래 제한 이후의 예금 지급 절차, 예외 인출 가능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고인께서 거래하시던 금융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